

진도군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자판기 설치·운영 사용 수익허가 사전 공고

진도군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판기 설치·운영 사용 수익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진도군수

1. 사용허가 개요

가. 건 명 :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자판기 설치·운영 사용 수익허가 사전 공고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

재산의 소재지	개요			사용 허가기간 (예정)	사 용 료	비 고
	종 류	대부면적 (㎡)	대수 (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73-1 (수국공원 앞)	캔음료 자판기	2㎡	1	2026. 6.~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60일)	무료 (전기사용료 별도)	

- ※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전기사용료는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현장 및 설치장소: 붙임1 설명자료 참조(별도 설명 생략하며, 계약 전 현장 확인 필수)
- ※ **1회용 컵 사용 음료 제외**
- ※ **제품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유명회사의 해당 제품이며, 판매 현황에 따라 요청시 요청품목으로 정기적 조정 필요**
- ※ 자동판매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설·구축비 또한 계약상대자 전액 부담
- ※ 자동판매기(음료)는 냉장이 가능한 냉장 자동 판매기를 설치
- ※ 자동판매기는 **현금,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
- ※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자판기 이용공간에 비치하며, 발생 쓰레기는 자체 수거 및 정리 필수
- ※ **운영수익에 대하여 지자체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방문 확인,

특히 '운영조건'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2026. 5. 18. 09:00(월) ~ 2026. 5. 27.(수) 16:00

3. 접수안내

가. 접 수 처: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3층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나. 인편 제출(본인 직접 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 및 우편제출 불가.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이상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담당부서 :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 TEL 061-540-3772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로 진도군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자동판매기 직영능력과 시설부담 능력이 있는 자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단, 동일 세대 내에서는 1명만 신청 가능)

나. 본 사전공고는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대상지에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하기 위하여 입찰전에 사전공고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 사용허가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불임의 허가 조건

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로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수국공원 운영에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 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라. 허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직접 자판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특수조건(붙임 참조) 제7조의 판매 품목 및 가격의 제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5. 구비서류

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 4] 1부

나.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업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조항	제출 서류(원본 1부)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장애인증명서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65세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16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제68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다.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라.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위임장(중증 장애인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1부.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 및 관련서류 확인하여 지참

6.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결정 방법

가. 아래 개별법령에 따라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서류 심사 결

과 하자가 없을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나. 가에 의거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아래 별표의 우선순위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우선 사용·수익허가 동일순위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 추첨순서는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시행함.

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대상자 결정

마. 대상자 결정 통지방법 : 개별 통지(추첨의 경우 현장 통지)

7.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마.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각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자동판매기 판매품목 및 가격표 1부.

아.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8. 계약체결(사용허가) 방법

가.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통보된 이후 5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특수조건 : [별지1] 및 [별지2] 참조

10. 현장 확인 및 설명 [붙임1] 참조

가. 별도의 현장사업 설명회는 갖지 않으며, 신청 시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

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회계 예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진도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 061-540-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사용허가 사전공고에 따른 설명자료

☐ 위탁운영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60일간

☐ 시설규모 및 위치

명 칭	소재지	설치 예정지	비고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자판기 설치 및 운영 사용허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73-1	수국공원 앞 이동식화장실 옆	

☐ 위탁업체 준수사항

- 붙임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준수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동 자료로 갈음하며, 기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별지

1. 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2.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3. 자판기 운영에 관한 사항 1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진도군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자동판매기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5월중 협의하여 개시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면제이나, 전기료는 별도 납부한다.

제4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자동판매기의 적당한 위치에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유지비와 부과금(제세공과금 등) 및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등은 사용인이 부담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진도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 설치하는 것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제7조를 위반한 때
4. 사용인이 변질·부패된 물품,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 무허가 물품 또는 교차 오염된 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판매할 때.
5. 위법 부당한 행위 및 불량, 유해 물품의 판매로 위생사고가 발생한 때
6. 사전협의 없이 5일간 운영하지 하지 않을 경우
7.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8.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9. 기타 진도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진도군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인에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①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도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진도군이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진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자의 입찰 참가 제한)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될 경우 차기 동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제8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시에는 진도군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도군은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계속 징수하며 진도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진도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진도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진도군의 결정에 의한다.

제18조(준용규정) 위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사용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연고권) 사용인은 당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설치장소) ① 자동판매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장소는 진도군이 정하는 장소로 하되, 설치장소 변경요청 시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에 따른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기타부대시설의 소요비용(이하 “설치장소 변경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전액을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4조(표식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즉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사용목적, 사용허가기간 및 관리자 성명, 유사시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식(이하 “안내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 품목 등) ① 사용인은 자동판매기를 운영함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제조자, 구매가격,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전에 진도군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표시한 명세서를 진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할 물품의 제조사는 공히 사회적으로 인정된 유명회사의 해당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식품위생 관련 법령 또는 판매금지를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가. 유해제품 및 불량제품으로서 무허가 식품, 유통기한 경과, 변조된 제품 등

나. 표시기준 위반 제품(표시사항 미 표시 및 허위표시 등)

다. 부패·변질된 제품, 교차 오염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제품

라. 식품위생상태가 불량한 영세업체에서 생산하는 음료

마. 고카페인 음료 및 1회용 컵 사용 음료

③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6조(판매가격) ① 사용인은 반드시 자동판매기 운영 개시 이전에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진도군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지5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 품목의 제조사·종류 및 가격 변동 시 전향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물품 판매 가격은 시중 소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전항의 의한 사용인에게 영업상의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진도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승인된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을 위반할 시는 제 11조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변상 책임을 진다.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 수거를 위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분리수거함은 수시로 정리하여 분리수거함 및 자동판매기 주변을 항상 위생적이며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동판매기 운영에 따른 영구 축조물, 기타 고정 부대시설 등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기타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그 소요비용 전액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④ 사전승인 없이 설치한 축조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진도군이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만·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즉시 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영구 축조물 등에 대하여는 기부 채납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인은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세공과금 등) ① **전기료, 물품보관창고 사용료 등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유지비용, 허가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배하여 식품위생 관련기관의 지도점검 시 적발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관리 등) ① 자동판매기의 운영 관리는 **낙찰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자동판매기 내의 판매 물품이 부족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루 1회 이상 방문하여 자동판매기 내의 물품을 보충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대상지가 방문객에게 휴양을 제공하는 공간임을 인지하고 친절과 봉사 자세로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주의사항을 소홀히 하여 불미스런 행위나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에 따라 제재처분 할 수 있다.

⑤ 자판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진도군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⑥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진도군의 자판기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진도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허가취소 전 경미한 위반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① 진도군은 사용인이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8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전에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할 수 있다.

- 가. 사용인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미스럽거나, 경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
- 나. 사용인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조건 등을 경미하게 위반한 때
- 다. 사용인 또는 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 라. 제14조의 청결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때
- 마. 기타 진도군이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때

② **위반횟수 및 제재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 횟수	제 재 처 분 기 준	비 고
1 회	시정 및 주의	1년간 위반횟수 누적 처리 ※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회	경 고	
3 회	영업정지 10일	
4 회	사용허가취소	

제12조(진도군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진도군의 판매 품목의 제조사, 종류 및 가격 제한 및 식중독 등의 사고발생 등에 따른 판매중지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영업상의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진도군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용객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않아 사용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진도군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때
- 나. 사용인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허가조건 위반, 기타 사유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
- 다. 사용인의 운송차량으로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한 때
- 라. 사용인 또는 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자동판매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재산상 또는 민·형사상 해당하는 행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
- 마. 사용인이 변질·부패된 물품,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 무허가 물품 또는 교차 오염된 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

때(사고의 원인이 사용인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② 전항의 사고와 관련한 치료, 치료비 및 피해보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사고 발생에 따른 치료,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사용인이 책임진다.

나.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밖의 모든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한 실제 치료비, 위자료 등은 일반관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용인”과 “사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라. 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치료 및 치료비, 보상 등 기타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완치될 때까지 사용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4조(청결유지) ① 사용인 또는 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보건위생상 부적합할 때에는 자판기 운영 관리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쓰레기 및 오물 수거를 위해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의 자동판매기내의 물품 보충 시에 이를 처리하여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사용허가 조건(일반·특수) 및 사용허가 등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쌍방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진도군”의 해석에 따르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사용인”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자동판매기 운영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소송관할 등) 본 허가조건 등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중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진도군”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중재기관 또한 이와 같다.

[별지 3]

자판기 운영에 관한 사항

1. 자판기 판매 허가 품목

품 목	판매가격	비 고
음료류 (일회용 컵, 고카페인음료 제외)	협의	품목 및 가격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진도군과 조정 협의 후 결정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진도군의 결정에 따른다.

※ 품목 및 가격은 사용허가신청 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도군과 조정 협의 후 결정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진도군의 결정에 따른다.

※ 공히 인정된 제조회사의 완제품만 판매 가능함.

2. 자판기 운영 사항

가. 기본원칙

- 1) 유해물품, 불량식품의 제조·판매금지
 - 무신고(허가)식품, 유통기한 경과식품, 변조된 식품
 - 표시기준 위반식품(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기재 등)
 - 부패, 변질된 식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식품
- 2) 판매단가는 시중 소매가 이하로 한다.

나. 판매금지 품목

- 1) 식품위생 상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불량한 영세업체의 음료류 등
- 2) 종이컵 음료수(1회용커피 포함), 고카페인음료(1㎖당 0.15㎖이상 함유)
- 3)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포장지나 상자에 제조원과 유통기간이 표시된 제품만 판매)
- 4) 기타 식중독의 우려가 높은 제품

다. 사용허가시 제출한 판매물품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으며 품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취급품목은 공히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필한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3. 자판기 운영자(사용인) 준수사항

가. 보건, 위생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다.

나. 사용허가 시 제출한 판매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으며 품목을 변경할 경우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 및 사용하여야 하며 자판기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한다.

라.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 마. 자동판매기 운영 중 발생한 사용인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진도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바.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의 위생,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변에 분리수거통을 비치하고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수거하여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처리는 사용인이 직접 처리한다.)
- 사. 사용인은 판매물품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인이 부담하며, 자동판매기 보안을 위한 물품(잠금장치 등)등을 설치할 경우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하자를 제외하고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소모성 물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 아. 사용인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자. 기타 세부사항은 진도군의 지시에 의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진도군청 계약 담당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진도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진도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청렴 SMS 발송 목적으로 아래 기간동안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용항목	수집기간	이용기간	이용기관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1년	진도군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1년	전라남도
권익위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1년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진도군수 귀하

[붙임 4]

진도군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명	진도군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영업의 종류	자동판매기	
영업장소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73-1 자동판매기 사용 및 수익 허가 지정장소			
설치대수	총 1대(캔음료자동판매기 1대)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5월 일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				
관련부서 확 인 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국가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붙임 5]

수 의 계 약 각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상기 본인(법인)은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년 올해 이년

성명 : (인)

진도군수 귀하

수 의 계약 결 격 사 유

- ①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위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상기 자에게 진도군 운림산림욕장(수국공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 (인)

진도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작성 및 보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자동판매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한 사용·수익 허가자와 연락의 필요성
- 기타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일반정보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회정보항목 : 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 한부모가족 증명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증명
- 통신정보 : 전자우편, 연락처(핸드폰 번호 포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는 관련 문서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 사용·수익 허가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계약의 체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목적】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수집하는 고유식별번호의 항목】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고유 식별번호를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의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귀하의 고유식별번호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 사용·수익 허가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고유식별번호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계약의 체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진도군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승낙합니
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진도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유무조회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유무조회	

2. 이용기관의 명칭 : 진도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